



## 대학정보화발전위원회 규정

|      |            |
|------|------------|
| 제정일  | 1998. 7.30 |
| 개정일  | 2021. 4.15 |
| 개정차수 | 6차         |
| 담당부서 | 전산정보과      |

-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정보화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방향 설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13)
- 제 3조 (설치) 위원회는 총장 자문기구로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 2.13)
- 제 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 1, 2021. 1. 1)  
 ③ 당연직 위원은 처·국장으로 하고 심의 내용에 따라 교직원 중에서 약간 명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2021. 1. 1, 2021. 4.15)
- 제 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 제 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정보통신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2. 교육정보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본교의 정보화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8. 학내의 정보화 관련 주요사항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2.13)
- 제 8조 (연구 및 실무위원 위촉) 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 중에서 제7조의 사항을 연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와 위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총장은 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2.13)
- 제 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2.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 2.13)
- 제11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무를 보조하며, 회의자료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③ 간사는 업무 소관부서 직원이 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